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091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8.

발의자 : 김재섭 · 김미애 · 엄태영
서천호 · 최수진 · 윤한홍
김은혜 · 신성범 · 김기웅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도서 · 신문 · 공연 · 체육시설 사용료 등(이하 “문화체육사용분”이라 함)을 지출한 경우에는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%로 상향하고,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35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“금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)보다”를 “금액보다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·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 · 직불카드등사용분 · 문화체육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: 신용카드사용분 × 100분의 15 + 직불카드등사용분 × 100분의 30 + (최저사용금액 - 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카드등사용분) × 100분의 35

라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· 직불카드등사용분 · 문화체육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: 신용카드사용분 × 100분의 15 + 직불카드등사용분 × 100분의 30 + 문화체육사용분 × 100분의 35

(최저사용금액 - 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카드등사용분 - 문
화체육사용분) × 100분의 40

마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최
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
보다 큰 경우: 신용카드사용분 × 100분의 15 + 직불카드등사용
분 × 100분의 30 + (최저사용금액 - 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
카드등사용분) × 100분의 4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
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사용분을 지급하는 경
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· 제2호 · 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(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 | ② ----- |
| 1. · 2. (생 략)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(이하 이 항에서 “문화체육사용분”이라 한다) × <u>100분의 3</u> 0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 | 3. ----- 100분의 35----- |

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)

가. ~ 다. (생 략)

4. • 5. (생략)

6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
금액. 다만, 2023년 1월 1일부
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
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
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
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
으로 한다.

가. (생 략)

나.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
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
사용분과 직불카드등 사용
분을 합친 금액(해당 과세
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
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
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
금액)보다 작거나 같은 경
우: 신용카드사용분 \times 100
분의 15 + (최저사용금액
- 신용카드사용분) \times 100
분의 30

다.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칙불카드등 사용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----- . -----

----- 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다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
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

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
우: 다음 구분에 따른 금
액

1)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
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
우: 신용카드사용분 × 100
분의 15 + (직불카드등사
용분 + 문화체육사용분) ×
100분의 30 + (최저사용금
액 - 신용카드사용분 -
직불카드등사용분 - 문화
체육사용분) × 100분의 40

2)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
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
는 경우: 신용카드사용분
× 100분의 15 + 직불카드
등사용분 × 100분의 30 +
(최저사용금액 - 신용카
드사용분 - 직불카드등사
용분) × 100분의 40

<신 설>

로서 최저사용금액이 신용
카드사용분 · 직불카드등사
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크
고 신용카드사용분 · 직불
카드등사용분 · 문화체육사
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
거나 같은 경우: 신용카드
사용분 × 100분의 15 +
직불카드등사용분 × 100
분의 30 + (최저사용금액
- 신용카드사용분 - 직
불카드등사용분) × 100분
의 35

라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
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
로서 최저사용금액이 신용
카드사용분 · 직불카드등사
용분 · 문화체육사용분을
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:

| | |
|---|-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(생략) ③ ~ ⑩ (생략)</p> | <p><u>신용카드사용분 × 100분</u> <u>의 15 + 직불카드등사용</u> <u>분 × 100분의 30 + 문화</u> <u>체육사용분 × 100분의 35</u> <u>(최저사용금액 - 신용카</u> <u>드사용분 - 직불카드등사</u> <u>용분 - 문화체육사용분)</u> <u>× 100분의 40</u></p> <p><u>마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</u> <u>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</u> <u>경우로서 최저사용금액이</u> <u>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</u> <u>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</u> <u>다 큰 경우: 신용카드사용</u> <u>분 × 100분의 15 + 직불</u> <u>카드등사용분 × 100분의</u> <u>30 + (최저사용금액 - 신</u> <u>용카드사용분 - 직불카드</u> <u>등사용분) × 100분의 40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 ③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|---|